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및 웹진 이음 운영」

입찰 공고(긴급)(재공고)

(제한총액 / 협상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경영관리팀 하원빈(02-760-9713)
- 제안요청서, 사업 내용 등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 김선형(02-760-9727)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참조)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긴급)(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및 웹진 이음 운영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 463,000,000(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20,909,091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서 접수	개시	2020. 6. 23. 17:00	제안서 접수	개시	2020. 7. 3. 10:00
	마감	2020. 7. 3. 14:00		마감	2019. 7. 3. 14:00
※ 제안서는 방문 제출(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이음센터 3층)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등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사업자\)\[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또한,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업체**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3. 공동계약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허용**

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5호)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여야 하며,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불가, 구성사업자별 담당 업무의 명확한 구분(역할분담)을 제시하여야 함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0. 06. 23, 17:00 ~ 2020. 07. 03, 14:00
-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0. 07. 03.(금), 10:00 ~ 14:00
-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다. 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이음센터 3층(02-760-9713)**

라.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2)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 제안요약서는 PT 시 별도 제출
-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1개
- 4) 가격입찰(제안)서 ·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 가격산출근거서는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380백만원, 웹진 83백만원
각 과업별 예산 한도 내로 작성해야 함(총 추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더라도
각 과업별 할당된 예산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6)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혹은 사용인감계 각 1부(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8)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조합 확인서(배정계획서
1부 포함),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중 1부
- 9)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10) 실적증명서 각 1부
- 11)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12)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13) 서약서 1부
- 14) 정보비공개 동의서 1부
-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 제출)
-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장 발행) 사본 1부
- 18)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부
-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부
- 20)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부
- 2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
- 2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23)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1~6번까지는 공동수급체가 통합하여 1부씩 제출하고, 7~24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

마.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300페이지 내로 작성을 권장함
- 제안서는 세로 형식, 제안요약서는 가로 형식 권장(A4 용지 기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세는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상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PT(평가일정 및 시간 별도 안내 예정)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 설명(평가위원 질의응답시간 포함)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 제안서 PT 개최를 공고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T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 10부는 PT 당일 별도 제출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90점) :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9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 *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씩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자를 선순위로 함)
- 다.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라.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 마. 모든 협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나.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다. 입찰보증금 및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함
-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9. 입찰의 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 참고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는 등 장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9. (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붙임)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 상호(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갑”과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을”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갑”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갑”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갑”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